

의안번호	2200099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4.07.11.
추계번호	24C0461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7조의3 (간병인 관리·감독)	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 관리·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*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(제2항) *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	재량규정
2	안 제60조의4 (간병인력의 양성)	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1. 간병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·장기 간병인력 양성 계획 2. 간병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원 3. 간병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. 그 밖에 간병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7조의3 (간병인 관리·감독)	▫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병인 관리·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은 외부 연구용역 등의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마련 가능하여 추가제정소요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－ 예시로,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“요양병원 간병인 관리·운영에 관한 표준지침(안)”(24.02.23.)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배포하였음
2	안 제60조의4 (간병인력의 양성)	▫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간병인력의 양성(안 제60조의4)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간병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해당 규정은 권고·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현시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추진될 사업의 범위와 지원 수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 - 현재 보건복지부는 “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”(2023.12.21.)에서 ‘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’를 위한 간병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검증(2024.07.~2025.12.), 필요 간병인력 정밀 추계(2026.01.~2026.12.) 계획을 밝혔으며,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 강화로 간병인·서비스 질을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